



학폭은 시간끝면 끝? 논란 된 ‘집행정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낙마하면서 국수본이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가수사본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로 인해 학폭 사건의 처리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3월에 처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재심절차가 이뤄졌고, 소송까지 가면서 실제 전학은 한참 뒤에 이뤄졌습니다.

학폭위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되는 수단은 ‘집행정지’입니다. 학폭위 결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이어서 소송을 낸 것만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측은 학교가 전학 등 학폭위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행정소송법 23조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학폭위 결정이 뒤집어졌는데 이미 강제전학 등의 처분이 이뤄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때까지 그 효력을 멈춰 달라는 것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은 1심~대법원까지 심급마다 집행정지를 총 3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학폭위 결정대로 전학처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강원도청이나 강원도교육청, 학교가 모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학집행에 나서지 않아 전학이 늦게 이뤄졌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법원이 각 심급마다 집행정지를 받아 주고 이로 인해 사실상 학폭위 처분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을 돼지라고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헤드락'을 걸어 쓰러뜨리고 등을 발로 차며 언어폭력을 행사한 한 고교생의 경우 2020년 9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학생측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구체적인 절차로는 나아가지 않았고 학생이 2021년 2~3월 학교를 졸업해 학생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된 동안 이미 학교를 졸업해 학폭위가 내린 처분이 소용없게 됐으므로 법적으로 다룰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처분을 받은 이듬해 졸업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시간을 끈 것으로 보기

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소송이 2~3년 이어지는 사이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학폭 소송에서는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처분을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학생측이 승소해 학폭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마냥 '시간끌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11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한 중학생의 경우 법원은 '괴롭힘'의 핵심 내용인 성추행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데다 피해학생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강제전학 처분은 지나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 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이미 전학을 간 상태에서 '전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전 학교와 전학간 학교 모두에서 '학폭 피해자'란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판사들이 자기 손으로 아이 장래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상 다른 소송보다 집행정지를 쉽게 받아 주는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학폭 피해자가 무력화된 처분 때문에 학폭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괴로워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출처/조선일보)